

청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669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이유림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715,360원 및 그중 20,117,534원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0.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2020. 10. 22. 접수 제4639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20. 피고 A이 기업은행 D지점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5.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지연손해금(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2018. 10. 30. C은행 D금융센터로부터 받은 대출금(30,000,000원)과 관련해서도 원고와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간 2년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는데, 2020. 10. 30. 대출금 만기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11. 18.경 위 금융센터로부터 보증사고발생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9.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7,5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법적절차비용 527,306원을 지출하였고, 미수추가보증료 70,52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0. 8. 13. 피고 B이 피고 A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20. 8. 31.,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2020. 10. 22.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같은 일자 접수 제463941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등 합계 20,715,360원(= 20,117,534원 + 527,306원 + 70,52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0,117,53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21. 10. 6.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10. 22.에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관련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20. 10. 30. 피고 A이 다른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한 점, ③ 이후 원고가 실제 기업은행 제천지점에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갑 제7,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2020. 10. 22.)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 E 트랙터가 있었고, 위 각 자산의 가액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115,000,000원, 위 승용차가 20,000,000원, 위 트랙터가 180,000,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B은, 갑 제13호증의 가격자문보고서에서 위 승용차 및 트랙터의 가액을 최소금액 200,000,000원, 최대금액 280,000,000원으로 산출하였는바, 최소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가격자문보고서의 기재상 감정평가사가 등록원부와 중고차시세 등을 근거로 대상물의 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최대금액은 평가결과 금액에 1.4배를 곱한 금액으로 각 대상물의 최초등록일에 비추어 볼 때 시세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승용차의 경우 12년이 경과하였고, 트랙터의 경우 신차 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출방식이 부당하다거나 산출결과가 시세에 비해 과소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 총액은 315,000,000원(= 115,000,000원 + 200,000,000원)이다.

3) [소극재산] 기초사실과 갑 제3, 5, 14호증의 각 기재, E, F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2020. 10. 22.)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아래와 같은 채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합계액은 337,243,953원이다.

① 기업은행 제천지점 대출금채무 20,000,000원(갑 제5호증)

② G카드 9,647,000원(갑 제14호증)

③ C카드 5,320,000원(갑 제14호증)

④ F 19,197,976원(2022. 7. 12.자 회신서)

⑤ H 30,600,000원(갑 제14호증)

⑥ E 172,683,977원(2022. 6. 14.자 회신서)

⑦ C은행 D금융센터 30,000,000원(갑 제3호증)

⑧ I카드 3,795,000원(갑 제14호증)

⑨ 피고 B 46,000,000원(2021. 11. 8.자 답변서)1) 4) 피고 A은 이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A으로서는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의 재산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세(115,000,000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E)의 채권최고액(50,000,000원)과 피고 B의 채권최고액(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이 선의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해행위 이전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함이 타당하다(피고 B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범위에서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개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가분적인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20. 10. 22.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

별지

1) 을 제1호증 공정증서상 원리금 26,000,000원[= 25,000,000원 + (25,000,000원 × 2% ×

2개월)]과 그외 20,000,000원의 합계액이다.